##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758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이재강·윤종군·양문석

김우영 • 정을호 • 문금주

서미화・김문수・김 윤

복기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 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 19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협력"을 "협력 및 지원"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 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제19조(업무)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	8
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	
의 <u>협력</u>	- <u>협력 및 지원</u>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
	을 확대·강화할 목적으로 제1
	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
	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
	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